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 수립시 환류체계 신설〉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60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6. 1. 30.
3. 회 부 일 : 2026.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과 관련하여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게 하고, 해당 결과를 이후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u><신설></u>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정부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기본계획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관련 수급동향, 기술력 향상과 기술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는 계획으로서¹⁾,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²⁾.

현행법상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외에,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계획 반영 등 기본계획에 대한 환류체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정부가 기본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이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하는 등 기본계획 관련 환류체계를 신설하는 것임.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수급과 기술동향, 인력양성과 기반조성 등 기본계획이 다루고 있는 사항이 광범위하여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점,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당수가 중장기적 사항으로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추진되고 있는 점³⁾을 고려할 때 정부가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⁴⁾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⁵⁾, 「과학기술기본법」⁶⁾ 등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하여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입법례 중 상당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류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에,

-
- 3) 제1차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21-'25) 의결('20.10.) 후 제2차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26-'30) 의결('25.10.)
-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6)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쟁력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되는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환류체계 입법례

법률	기본계획	실행계획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정부가 5년단위로 수립 *개정안) 정부가 기본계획 분석·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정부가 5년단위로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정통부장관이 5년단위로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매년 수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산업통상부는 현행법상 경쟁력위원회가 매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와 같은 실행계획 추진실적 환류결과를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이와 별개로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에게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논의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0